

탄핵심판 보충의견서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의 견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헌법재판소 귀중

주요목차

I. 의견인들이 탄핵심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

II.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1.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판단과 이 사건 계엄의 위헌성·중대성

- 가. 국가긴급권에 관한 헌정사
- 나. 역대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
- 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단
- 라. 소 소결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동의 중대성

2. 12. 3 계엄이 계몽 내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반박

- 가. 단전·단수 등 구체적 실행행위에 따른 주장
- 나. 계엄선포 전 비상계엄 및 포고령 실행 사전 모의
- 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구체적 지휘·실행
- 라. 소 소결

3. 체포명단 실체와 국정원, 경찰, 수방사의 구체적 실행행위

- 가. 피청구인의 불법한 체포 명령의 존재
- 나. 계엄해제 방해 및 사적 보복 목적 체포 대상자 선정
- 다. 소 소결

4. 소결

III.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및 법률 수호의지에 관한 주장

1. 장래적으로 헌법 수호의지 및 역량의 존재 여부에 관한 주장

2. 피청구인의 2차 계엄 시도

- 가. 피청구인의 2차 계엄 발언 및 해제결의안 통과 후 4시간이 경과한 뒤 계엄해제 공고
- 나. 계엄해제 후에도 계엄군 철수를 지시하지 아니함
- 다.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2차 계엄을 지시한 사실 확인 개요
- 라. 소 소결

3.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및 체포방해

4. 피청구인 주장·진술의 허위성 및 부당성

- 가. 비상계엄 선포 목적의 허위성, 위법성 몰이해
- 나. 국회 및 국회의원 입법권 저해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의 허위성
- 다. 국회의 입법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진술의 허위성
- 라. 피청구인 발언의 모순점 -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의 전화

5. 끊임없는 지지자 내란 선동

- 가. 변론 절차에서의 피청구인의 진술
- 나.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 다. 피청구인외 김용현의 옥중 편지
- 라. 소 소결

6. 소결 - 헌법 및 헌정질서 수호의지의 부재

IV. 결론

아 래

I. 의견인들이 탄핵심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

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12 귀 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과 함께 윤석열 파면에 상당한 헌법과 법률 위반 및 그 중대성에 관한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청구인 윤석열 및 변호인들의 탄핵심판 변론절차에서의 주장, 변론은 곡학아세, 지록위마, 후안무치, 거짓으로 점철된 비상식적 변론에 다름 아니었으며, 더더욱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윤석열의 ‘뻔뻔하면서도 누추한’ 주장과 태도는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 가치와 성과, 품격을 일거에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3. 이에, 추가로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통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II.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1.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판단과 이 사건 계엄의 위헌성·중대성

가. 국가긴급권에 관한 헌정사 (별지 참조)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총 9회 선포되었습니다.

	선포사유	선포기간	선포지역
1	여수·순천 10.19사건 ¹⁾	1948. 10. 21. ~ 1949. 2. 5. (108일)	여수·순천
2	제주 4·3 사건 ²⁾	1948. 11. 17. ~ 12. 31.(76일)	제주도

3	6·25 한국전쟁	1950. 7. 8. ~1953. 7. 23. (3년 16일)	전국 또는 지역
4	4·19 혁명	1960. 4. 19 ~ 6. 7. (50일)	서울 등 5개 도시 → 전국 확대
5	5·16 군부쿠데타	1961. 5. 16 ~ 5. 27. (12일)	전국
6	6·3 항쟁	1964. 6. 3. ~ 7. 29. (57일)	서울 일원
7	10월 유신	1970. 10. 17. ~12. 13. (63일)	전국
8	부마항쟁	1979. 10. 18. ~10. 27. (9일)	부산, 마산
9	10·26 사건	1979. 10. 27. ~ 1981.1. 24. (456일)	제주도 제외 전국
		1980. 5. 17. 24:00	전국확대

먼저, 비상계엄의 역사를 보면, 첫 비상계엄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때에 발동하였는데, 계엄법이 1949. 11. 24. 이전에, 즉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임에도 일제 강점기 계엄법³⁾을 적용하여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1960. 4. 19.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15시를 기해 서울지역에 계엄군을 보내 학생 시위를 막도록 했지만, 같은 날 13시 30분경 발표로 사망자가 나오자 오후 1시로 위헌성 시비를 막고자 소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는 4차례에 걸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군사쿠데타 당일인 1961. 5. 16. 아침 9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면 정권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한일협정반대투쟁이 한창이던 1964년 6.3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나자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영구집권을 위하여 1972. 10. 17.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습니다.

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순사건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51호, 2025. 1. 7., 일부개정]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4·3사건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4호, 2024. 1. 30., 일부개정]
3) ‘일본은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하여 정도가 덜 심각한 긴급사태(전쟁상태)인 臨戰地境과 정도가 심각한 긴급사태(합위상태)인 合圍地境으로 하여 1882년 계엄령을 제정하였다. 臨戰地境戒嚴하에서는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중 군사에 관한 사건에 한하여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고, 合圍地境戒嚴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모든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가졌다.’ 백운철. [일제치하에서 계엄법 The Martial Law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2012.

박정희 군사정권 말기, 1979. 10. 16.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부산 지역 시위가 격화되자 1979. 10. 18. 0시를 기해 부산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가 확산된 마산 창원 지역에는 10. 20. 위수령이 발령되었습니다.

1979. 10. 26. 박정희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10. 27. 04:00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 5. 17. 24:00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며, 1980. 9. 1.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대회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나. 역대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

통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발령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직후 발령된 포고령 제10호, 비상계엄 하 1980. 8. 4. 발령된 삼청교육대 관련 포고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정치권력의 위기’를 면할 목적으로, 또는 집권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일 뿐 당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1972. 10. 17. 유신정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포고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계엄포고 1호⁴⁾의 내용은 1972. 10. 17. 대통령 특별선

4) <1972년 10월 17일 계엄포고 1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이하 생략...)

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현행 헌법·구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

또한, 박정희가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1979. 10. 18. 선포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 제1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포고 제1호의 내용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엄포고 제1호는 유신헌법과 구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계엄포고 제1호의 내용은 유신헌법 상으로도 인권 최대보장 및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현행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전두환 신군부가 1980. 5. 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한 포고령 10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0. 선고 2019재고단3).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된 것으로 위헌이다.

대법원은 1980. 8. 4.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소위 ‘삼청교육대’ 관련)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다. 박정희 군사정권하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단

소위 10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명문으로 사법심사를 배제한 긴급조치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전원재판부).

국가긴급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고,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조항을 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일 뿐 아니라, 현행헌법이 반성적 견지에서 사법심사배제조항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헌법에 따라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을 다룰 수 있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의 증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주권자이자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이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정을 주장하거나 청원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긴급조치 제9호는 국민주권주의에 비추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총화를 공고히 하고 국론을 통일하는 진정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국민총화와 국론통일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또한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⁵⁾.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

라. 소소결 - 역대 사법적 판단에 따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동의 중대성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비상계엄 및 포고령, 긴급조치, 또는 긴급재정명령 등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 그 발동 요건 및 내용의 위헌·위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판단해 왔습니다.

선행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청구인의 12.3 계엄선포 및 계엄포고령 제1호가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라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포고령의 내용 역시 우리 헌법상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능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배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서, “유신헌법’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서도 “유신헌법’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위헌·무효를 선언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의 목적 내지 동기라고 밝히고 있는 부정선거, 야당의 폭거, 용산 예산 삭감, 계몽 내지 경고 등’은 백 보 양보하더라도 ‘정치 영화’의 주제가 될지언정 그 자체로도 헌법상 계엄의 목적이나 동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력’(수단)으로서 대처할 것이 아님은 구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21대, 22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적인 체제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다수 야당⁶⁾과의 협치가 불가피함에도, 예산삭감, 탄핵은 헌법상의 국회의 권한이고, 부정선거 등은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헌정질서, 나아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더 이상 그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유라 할 것입니다.

2. 12. 3 계엄이 계몽 내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반박

가. 단전·단수 등 구체적 실행행위에 따른 주장

피청구인은, 12. 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국회 독재에 맞선 질서 유지였다”⁷⁾,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하면서 12. 3 계엄 및 계엄포고령에 대한 실행 의사도 없었고, 구체적인 실행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⁸⁾.

그러나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및 포고령 실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2024. 12. 3. 23:30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직후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위 포고령을 구체적으로 지휘·실행하였으므로 12.3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6) 피청구인은 “취임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로텐더 홀에서 대통령 퇴진시위를 하거나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자리 예산 기초연설을 했다.”,“(야당의) 줄탄핵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목표”라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정치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야당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적’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7) 대통령 윤석열 탄핵(2024헌나8) 2025. 1. 23. 제4차 변론기일 피청구인의 발언 참조.

8) 대통령 윤석열 탄핵(2024헌나8) 2025. 2. 25. 제11차 변론기일 피청구인의 발언 참조.

나. 계엄선포 전 비상계엄 및 포고령 실행 사전 모의

피청구인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5. 2. 11.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청구인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의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청구인 집무실 문건을 보았는데, 그 문건은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머리말로 시작되는 것이었고 거기에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이 적혀 있었고,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청구인이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였음을 사실상 시인하였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한 2025. 1. 14. 제22대 임시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라 함) 회의에서 ‘피청구인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 12. 3. 18:00~19:30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다”라고 진술하여 단전·단수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을 사실상 시인하였습니다¹⁰⁾.

이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진술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진술에 의하면 2024. 12.

9) 윤석열(2025. 1. 26.) 공소장, 죄명 내란우두머리, 42면.

10) 제22대 임시국회 2025. 1. 14.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101면.

3.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전 소방청에 언론사 및 여론기관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이 존재하였던 사실과 피청구인이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언론사 및 여론기관의 단전·단수 관련 지휘가 담긴 문건을 국무위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계엄 포고령 제1호의 제2항(‘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과 3항(‘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의 집행을 위하여 계엄선포 전부터 구체적인 지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엄이 실행 의사도 없었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구체적 지휘·실행

피청구인의 공소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사전 지시를 받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2024. 12. 3. 23:34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2024. 12. 3. 23:37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24:00경 다수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허석곤 소방청장은 위 지시사항을 김조일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위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2024. 12. 3. 23:40경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하였고, 허석곤 소방청장은 2024. 12. 3. 23:50경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에게 재차 전화하여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¹¹⁾.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5. 2. 11.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계엄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나서 단

11) 윤석열(2025. 1. 26.) 공소장, 죄명 내란우두머리, 98-99면.

전·단수를 무작정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선포 후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게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없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고¹²⁾, 허석곤 소방청장은 2025. 1. 13. 제22대 임시국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으로부터 전화로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및 경찰청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¹³⁾.

또한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은 2025. 1. 14. 내란 국조특위에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32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¹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2024. 12. 3. 23:35~23:37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신에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보여주면서 ‘국회 정치활동이 금지된 포고령이 발표됐으니 서울청에 전화해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 전화해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¹⁵⁾,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되지도 않는 불법·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저항해야 하는 게 상식이고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였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¹⁶⁾.

이상과 같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한 진술,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직후인 2024. 12. 3. 23:34~23:37 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통해 소방청장, 경찰청장에게 계엄포고령과 관련하여 지휘·명령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12) 뉴시스, “이상민 ‘윤한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 2025. 2. 1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1_0003060807

13) 제22대 2025. 1. 13.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회의록 제2호 57-58면.

14) 제22대 임시국회 2025. 1. 14.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84면.

15) 제22대 임시국회 2025. 1. 14.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84면.

16) 제22대 임시국회 2025. 1. 14.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101면.

라. 소 소결

결국 피청구인은 12. 3 계엄이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비상계엄 및 포고령 실행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2025. 12. 3. 23:30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직후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위 포고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12. 3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체포명단 실체와 국정원, 경찰, 수방사의 구체적 실행행위

가. 피청구인의 불법한 체포 명령의 존재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제3차 변론기일에서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계엄 당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은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서 “구금 시설은 방마다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수방사 B1 벙커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물으며 체포지시 의혹을 부인했고 피청구인 역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체포지시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2024. 12. 3. 22:53 피청구인으로부터 “씩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은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체포 대상을 듣고 받아적었는데 그 명단이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양경수, 양정철, 조해준 등 14명

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명단을 받아 적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일부 명단을 적지 않았으나, 이후 복기해 명단을 적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 홍장원이 기억하는 명단에는 김동현 판사가 적혀 있지는 않으나,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것은 위 조지호, 여인형 각 진술과 동일하고 피청구인이 단순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에 충분합니다.

12. 3. 계엄 당일 실제 계엄군들이 국회 내 한동훈 대표의 방과 국회의장 방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자 쏟아져 나오는 영상, '여론조사 꽃'의 사옥 앞에 계엄군들이 진입한 영상은 온 국민이 tv로 시청한 바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체포지시가 없었다면 계엄군들이 위 체포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방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김대우 국군 방첩사 수사단장은 2024. 12. 10.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와 구금 명령을 내렸고, 과천 수방사 지하 벙커 안에 수감시설을 확인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¹⁷⁾.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육군 대령) 역시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수방사 B1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며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아, 대신할 시설을 준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수방사 B1 벙커’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체포하면 이들을 구금할 장소로 지목된 장소입니다¹⁸⁾.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피청구인의 체포지시를 부인하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대상자를 알려주며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뿐이라고 진술해 피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하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하면서 체포명단을 언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17) SBS, “체포 지시받아…수방사 벙커에 구금시설”, 2024. 12. 10.
<https://www.youtube.com/watch?v=jOvBM69nehs>

18) 중앙일보, “정치인 구금시설로 수방사 B1벙커 답사…플랜B는 미결수용소”, 2025. 2. 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2694>

나. 계엄해제 방해 및 사적 보복 목적 체포 대상자 선정

체포 대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실제로 반국가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청구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반국가세력으로 분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원,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14명을 특정해 국정원, 경찰, 계엄군 등을 통해 그들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체포 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한동훈, 조국, 권순일, 김명수, 김어준, 양경수, 김민웅, 양정철, 조해준 (선관위 관련) 등 14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 이재명의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 김동현,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체포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을 체포할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들에 대한 체포지시는 위법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체포를 하달한 것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고 비상계엄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수방사와 특임단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내,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여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대비한 것이며, 비상계엄을 반대한 한동훈을 체포해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회의원만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대통령 권한을 악용해 무력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반헌법적인 결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회와 ‘여론조사 꽃’ 등으로 계엄 당일 병력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포 대상인 14명 명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정치인 15명을 체포한다며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므로, 계엄군이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말과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2025. 2. 20.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 체포 명단을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사실을 진술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방첩사 체포 명단과 조지호의 체포 명단과 유사하다고 덧붙였으므로 여인형, 홍장원, 조지호의 체포 명단 중 주요 인물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들 중 정치인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한동훈 등’은 피청구인의 정적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12. 3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체포 대상자 명단에는 김명수¹⁹⁾, 권순일²⁰⁾, 김동현 판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김동현 판사’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중 김동현이 경기도지사 김동연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되물었다가, 여인형으로부터 ‘이재명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달리,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판사의 판결이 피청구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법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19) 전 대법원장 김명수는 피청구인 집권 초기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몫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20) 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순일이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다. 소 소결

피청구인이 ‘패악질을 일삼는다’,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종북 반국가세력’ 등의 실체가 사실은 피청구인에게 적대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은 12. 3 계엄이 피청구인의 정적 제거 시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입니다.

특히 체포 대상자에 총선과 관련된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생각이 심각한 망상에 이르러 남은 임기 동안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자질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4. 소결

이미 역사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계몽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령행위는 현행 헌법과 계엄법이 예정하고 있는 발동 상황 및 목적, 수단, 그리고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지시하여 실행한 국회 지하1층 단전 그리고 방송국 등에 대한 단전·단수 기도, 포고령 제1호의 구체적 집행을 위하여 선관위와 국회에 계엄군 출동한 점이나 체포(수거)대상의 존재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행위는 단순한 위헌 위법을 넘어 파면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위헌·위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Ⅲ.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및 법률 수호의지에 관한 주장

1. 장래적으로 헌법 수호의지 및 역량의 존재 여부에 관한 주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동의 상황요건, 목적, 수단 등에 있어서 헌법과 계엄법 등에 위반하였음은 명명백백하고, 이하에서는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피청구인윤석열의 곡학아세, 후안무치, 지록위마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하여, 장래적으로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지위와 역할, 나아가 역량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도저히’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윤석열’에게 다시는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자 합니다.

2. 피청구인의 2차 계엄 시도

가. 피청구인의 2차 계엄 발언 및 해제결의안 통과 후 4시간이 경과한 뒤 계엄해제 공고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지체없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4. 12. 4. 01:02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있었음에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계속 지시하여 ‘2차 계엄’을 할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4. 12. 4. 01:02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즉시 계엄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30에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을 하고 같은 날 05:40에야 뒤늦게 계엄 해제 공고를 하였습니다.

나. 계엄해제 후에도 계엄군 철수를 지시하지 아니함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계엄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거듭 주장하였으나, 선관위로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중간 간부들은 검찰조사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자체 판단해 전원 복귀 지시를 내렸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자체 철수를 결정한 부하들에게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선관위 군 병력 재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특전사 고위 간부 등은 지난 12. 4. 새벽에도 김 전 장관이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²¹⁾.

이와 같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군 철수를 지시하지 않거나, 김용현 장관이 선관위에 계엄군의 재투입을 지시한 배경에는 12.3 계엄의 최고 결정권자인 피청구인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박안수 계엄사령관 역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 된 지 2시간이 지난 2024. 12. 4. 03:00경 계엄사 참모진들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들에게 복귀 지시도 내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²²⁾.

특전사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은 2024. 12. 4. 3:30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했고, 계엄군은 같은 날 1:50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해, 4:45까지 배회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2024. 12. 4. 1:02 계엄해제 의결 후에 계엄군에게 철수지시를 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며,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2차계엄을 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해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21) SBS 뉴스, '[단독] "바로 지시했다"더니...철수에 "여인형 화내며 욕", 2025. 2. 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72467

22) 한겨레, '2차 계엄 의혹' 용산행 참모진 34명...박안수 "복귀 명령한 적 없다", 2025. 2. 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4813.html

다.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2차 계엄을 지시한 사실 확인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2025. 2. 21. 내란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나 위 박안수가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고 말했고, 여기에서 '일'은 '계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²³⁾.

즉 국회에서 12. 3 비상계엄에 관한 해제 결의안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은 2차 계엄을 준비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계엄사령관의 행동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차 계엄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12. 3 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요구안 의결이 있는 후에도 2차 계엄을 운운하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계속 지시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재차 계엄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한 계엄군들에게 즉시 철수지시를 하지도 아니하는 등 2차 계엄을 도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적어도 장래적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3.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및 체포방해

피청구인은 일국의 대통령이지만, 또 한편으론 내란죄의 수사 대상으로서 체포영장을 받는 피의자이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체포를 면하려고 기도하였습니다.

23) 연합뉴스, '합참 계엄과장 "계엄사령관, 해제 조언에 '일머리 없다' 말해', 2025. 2. 21.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144500504>

피청구인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언론보도²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압수한 경호처 간부의 2024. 12. 4.자 메모에는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외부인 엄격히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경호처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촌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일인 2025. 1. 3.에도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불러 “관저 2정문(피청구인이 거주하는 숙소 앞 문)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해지고, 실제로 1차 체포영장은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피청구인은 2025. 1. 7.에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경호 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²⁵⁾되었습니다.

이에 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말씀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고 하며 “송고한 임무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바, **피청구인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에 불응할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청구인은 2025. 1. 10. 경호처 부장단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총을 쏠 수는 없냐”고 하였고, 이에 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지시 이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025. 1. 11.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기관단총 MP7 2정을 배치하였으며,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라고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인되었습니다.²⁶⁾ 위와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최근 경찰은

24) 한겨레, [단독] 윤석열 관저 봉쇄령에 이광우 “미친 x들 다 때려잡는다”, 2025. 2. 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503.html

25) 한겨레, [단독] “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 윤석열, 김성훈에 영장방해 지시, 2025. 2. 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502.html

26) 경향신문, 이광우 경호본부장, 윤 체포영장 집행 당일 기관단총 배치 인정…“시위대 대비용”, 2025. 1. 2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31644001>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였습니다.

최후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피청구인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총기 사용까지 지시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명을 띠는 대통령의 자세라고는 볼 수 없는바, 이 점에서도 피청구인을 조속히 파면해야 함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4. 피청구인 주장 내지 진술의 허위성 및 부당성

가. 비상계엄 선포 목적의 허위성, 위법성 몰이해

피청구인은 12. 3. 비상계엄의 선포 목적 및 경위를 여러 차례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가가 위기상황에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²⁷⁾,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확인을 위한 것’²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스크리닝 해보기 위함이고,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을 제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²⁹⁾.

피청구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국가의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부정선거 의혹’도 아닌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스크리닝 필요성’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정선거 의혹’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것이 아님은 다언을 요하지 않고, 만일 행정부의 주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

27) 대통령 윤석열 탄핵(2024헌나8) 2025. 1. 21. 제3차 변론기일 피청구인의 발언 및 2025. 1. 23. 제4차 변론기일 피청구인의 발언 참조.

28) 대통령 윤석열 탄핵(2024헌나8) 2025. 1. 21. 제3차 변론기일 피청구인의 발언 참조.

29) 대통령 윤석열 탄핵(2024헌나8) 2025. 1. 21. 제3차 변론기일 피청구인의 발언 참조.

법한 절차를 통하여 전산시스템 점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러한 권한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전산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그만큼 비상계엄의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주장 자체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법외 반에 나아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나. 국회 및 국회의원 입법권 저해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의 허위성

피청구인은 2025. 1. 23.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회의 위헌적 활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바로 직전인 2025. 1. 21. 제3차 변론기일에서는 “포고령은 국회를 해산하거나, 의정활동 금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위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기재되었던 계엄선포 당시 포고령 제1호에 명백히 반하는 진술입니다.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12. 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했다”라고 추가 답변서에서 변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³⁰⁾. 그러나 ‘착오로 기재했다’라는 변명은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선포한 포고령 자체에 기재된 내용조차 부인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탄핵심판에 대한 기만적 태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0) 경향신문, 윤석열 측 “계엄 포고령 문구 잘못 베낀 것” 추가 답변서 현재 제출, 2025. 1. 1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51439001>

다. 국회의 입법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진술의 허위성

피청구인은 여러 차례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의 원칙은 물론,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습니다.

피청구인은 제3회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군 투입은 단순히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³¹⁾, 그러나 실제 무장한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까지 통제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합니다. 피청구인이 지시한 군 투입으로 국회의 질서가 파괴되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지연되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 국회의 질서유지에 명백히 역행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2025. 2. 13.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국회의 정상적인 ‘질서유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국회의원의 체포·감금은 질서유지가 아니라 포고령 제1호에 기재된 의정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피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국헌문란 행위이다’, ‘국회 독재에 맞선 질서 유지 및 상징성의 군 투입이다’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³²⁾.

그러나 국가의 입법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한 기능으로,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법안 및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국헌문란 행위’라고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

31) 대통령 윤석열 탄핵(2024헌나8) 2025. 1. 21. 제3차 변론기일 피청구인의 발언 참조.

32) 대통령 윤석열 탄핵(2024헌나8) 2025. 1. 23. 제4차 변론기일 피청구인의 발언 참조.

다.33)

단순히 국회가 피청구인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법률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입법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통제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체화되어야 한다는 위헌적 인식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이미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복하며 실질적으로 국회가 의결한 입법 다수를 실효시켰으며 그것이 반복 행사됨에 따라 입법 기능이 이미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행사를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하는 피청구인의 진술은 삼권분립과 권력분립,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부인하고 1인 독재정권을 목표로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 피청구인 발언의 모순점 -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의 전화

무엇보다도 피청구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2025. 2. 13.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가서 공석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통화의 내용은 “방첩사령관과는 육사 선·후배니까 육사 선·후배 차원에서 방첩사 지원을 잘해줘라 뜻”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동시에 위 홍장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미 정치적 중립 문제로 국정원장의 신뢰를 잃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말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급박한 시점에 “국정원장의 신임을 잃은, 평상시에 통화할 일이 없는 차장”에게 굳이 전화하여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

33) 오히려 ‘국헌문란’ 규정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소위 ‘부산정치파동’ 비상계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 납치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형법 제정 과정에서 제91조 국헌문란 정의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거를 잘 도와줘라.”라는 걱려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데, 통화의 시점 및 앞뒤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같은 날 “만약에 정식 국무회의도 안 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할 것 같으면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왜 오며 (조태용) 국정원장은 거기에 왜 왔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 국무회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저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며,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무회의에 왔던 것은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³⁴⁾. 그런데 이는 앞서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가서 공석인 줄 알았기 때문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하였던 피청구인 본인의 발언과 모순됩니다.

피청구인과 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통화한 것은 2024. 12. 3. 20:22경이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대통령실에 들어온 시간은 20:30이라고 합니다. 만일 피청구인이 정말로 국정원장이 공석이라고 생각하였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국정원장을 출석시키고자 하였다면, 위 홍장원에게 전화하였을 때 국무회의에 대리 출석을 요구하였거나, 적어도 대리 출석할 다른 국정원 인사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바, “국정원장이 공석인 줄 알았다.”는 진술이나 “국무회의를 계획하였다.”는 진술 중 최소한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국무회의 직전 위 홍장원에게 전화한 이유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잠시만 곱씹어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나 최소한 재판에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무려 11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34) 본래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국무회의의 적법한 개최와 국정원장의 출석은 관련이 없으며, 국정원장의 배석 의무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헌법 제94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다만 피청구인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이 왔던 것”이라고 하여, 국정원장의 배석이 국무회의의 계획성 및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습니다.

5. 끊임없는 지지자 내란 선동

가. 변론 절차에서의 피청구인의 진술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보면 피청구인에게 헌법 수호 의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지자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만 있음이 확인됩니다. 특히 최종진술에서 근거 없는 선동의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12. 3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12. 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2. 3 계엄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야당’을 48번이나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행동했다고 하거나 중국, 러시아 편에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북한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자신을 퇴진시키려 한다며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북한의 지시에 따른 선거 부정개입이 있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며 구체적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에게 해킹당하고도 점검에 응하지 않았고,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가짜 투표용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계엄 당일 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 역시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12. 3 계엄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지지자들을 근거 없이 선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자들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두둔하였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지지자들을 향하여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국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여, 지지자들을 계속하여 선동하였습니다.

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피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유포하여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결과 피청구인 지지자들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이 2025. 1. 15. 법원의 조치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규정해³⁵⁾ 지지자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지지자들은 202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범하여 쇠 막대기와 소화기 등 흉기를 소지하고 폭형을 행하며 법원을 파괴하는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피청구인이 12. 3 내란을 ‘결단’으로 포장하고,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자신을 ‘핍박을 받는 피해자’로 묘사했기에 피청구인을 지키는 명목으로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이라는 폭력적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피청구인 지지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헌법재판소로 행진해 헌법재판관을 지키는 경찰을 폭행하겠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청구인 변호인이 공개한 피청구인외 김용현의 옥중 편지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피청구인과 함께 구속 기소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고 쓴 옥중 편지가 피청구인 변호인의 대독을 통해 지난 3.1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공개³⁶⁾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5) 피청구인의 2025. 1. 15.자‘국민께 드리는 말씀’녹화 담화

36) 한겨레, 김용현 섬뜩한 옥중편지...전공의 이어 “헌법재판관 처단”, 2025. 3. 3.

(생략) 그러다 거대야당의 20번이 넘는 줄 탄핵과 입법 폭거, 초유의 정부 예산삭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자유대한민국의 암덩어리로 변질된 부정선거의 실체를 규명해서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헌법가치,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 제대로 된 나라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생략) 저는 오천만 국민께 고합니다.

1. 현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각하하라.
2. 각하하기 어렵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의결을 '다시 하라'
3.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000,000,000을 처단하라.

앞서 '처단'이라는 표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에 전공의 관련, 그리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에 처단한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 김용현의 거칠고 과격한 표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행위는 위 김용현의 주장 자체로도 그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 기구의 권능을 부인·훼손하는 것으로서, 반헌법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라. 소 소결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지속적인 선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피청구인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피청구인은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켰고 끝내 지지자들을 폭력적 행동으로 이끌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4920.html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의지 부재와 그의 선동적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을 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소결 - 헌법 및 헌정질서 수호 의지의 부재

피청구인은 2025. 2. 4.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국가기능 및 국민 기본권에 미쳤던 영향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변론기일에서는 한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며,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내란공작 및 탄핵공작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여 마치 정치적 재판의 피해자인 듯 행세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은 단지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인식이나 현실인식 부족을 의미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할 대통령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법기능, 입법기능을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 하에서만 해석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작’으로 바라보며 무조건적으로 파괴, 진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행정기능을 모두 정치세력화하여 본연의 기능과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 대립하도록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국정운영권자로 다시 복귀된다면 또다시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재현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국가세력으로 단정한 채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V. 결론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초당파적이고 중립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³⁷⁾.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정 사회세력의 이익에만 봉사하지 않고, 다양한 정당과 이익집단간의 균형을 맞추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최후의견 진술에서 야당에 대하여 “국정 마비와 국정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집단)”, “위헌적인 특검 법안을 (발의하여) 정치 선동을 하는 (세력)”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을 계엄의 주요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거론한 야당의 여러 행태는 국회 내에 상존하는 정치적 갈등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하여 이미 사법적 판단이 다수 내려져 있고, 선거관리시스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증이 가능함에도 그에 대한 존중과 검토없이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시간짜리 계엄”으로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국정질서를 마비시키는” “광란의 칼춤”으로 매도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조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부추겨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이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대통령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여러 권리들, 예를 들어 사형·감형·복권권(헌법 제80조), 헌법개정안 발안 및 공포권(헌법 제128조 이하), 국민투표부의권(헌법 제72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 등의 임명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은 대통령이 초당파적이고 중립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여된 것입니다(장영철, 『헌법학[제2판]』, 박영사(2024년), 810-811면).

또한, 피청구인은 최후 변론에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음모론을 수 차례 제기하였습니다. “중국인 3명이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하였다면서 “외국인의 간첩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음모론에 불과한 것이고, 북한에 대한 인식 또한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 8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달성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짓밟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청구인은 평화 수호 의무자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나라 군대를 국가방위와 평화적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함”이라는 명분 아래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최후의견 진술을 통해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화 수호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책을 방기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최후변론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행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행위에 대한 어떠한 성찰과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부정선거 내지 계몽이라는 호수 위의 달그림자를 좇아 헛된 망상’에 갇들어 있을 뿐입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선포 및 포고령의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고,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2차 계엄을 시도하였으며, 탄핵심판 과정 내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청구인에게 헌정질서 수호의지가 없었음도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2025. 3. 5.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별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계엄 선포 및 계엄법과 계엄법 시행령의 제·개정 연혁

계엄의 종류	계엄 선포 기간	계엄 선포 계기	당시의 정권	계엄법 제·개정 연혁	시행령 제·개정 연혁	비 고
합위지경 (비상계엄)	1948. 10. 25. ~ 1949. 2. 5.	여수·순천 10.19 사건	이승만 정권	(일제 계엄령 의용) 1949년 제정 계엄법 (법률 제69호) 적용		분단의 특수성
합위지경	1948. 11. 17. ~ 12. 31.	제주 4.3 사건				
비상계엄	1950. 7. 8. ~ 11. 10.	한국전쟁				
경비계엄	1950. 11. 10. ~ 12. 7.					
비상계엄	1950. 12. 7. (종류 변경, 일부 지역 변경) ~ 1954. 4. 10. (관보 제1089호 고시)					
경비계엄	1951. 4. 8. ~ 1952. 4. 20.					
경비계엄	1960. 4. 19. (13:00 ~ 17:00)					
비상계엄	1960. 4. 19. (관보 제2559호 고시) ~ 26. (종류 변경)	4.19 혁명	이승만의 정권 연장 기도			
경비계엄	1960. 4. 25. ~ 26. (일부 지역별 종류 상이)					
경비계엄	1960. 4. 26. ~ 7. 15.					
비상계엄	1961. 5. 16. ~ 27.	5.16 쿠데타	국가재건최			박정희 정권 창출

경비계엄	1961. 5. 27. ~ 1962. 12. 5.		고회의			
비상계엄	1964. 6. 3. ~ 7. 28.	6.3 항쟁				민주화운동 저지 목적
비상계엄	1972. 10. 17. ~ 12. 13.	10월 유신	박정희 정권		1970. 6. 16.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5049호)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위한 계엄 선포
비상계엄	1979. 10. 18. ~ (부산시 일원)	부마항쟁				민주화운동저지목적
	1979. 10. 27. 04:00 ~ (제주 제외 전국) 1980. 5. 17. 24:00 ~ (전국 일원) ~ 1981. 1. 24. 24:00	10.26 사건	대통령 유고 기간 이후부터 전두환 정권의 출범 후까지			전두환의 정권 확장을 위한 계엄 확대
				1981. 4. 17. 전부 개정(법률 제3442호)	1981.12. 19.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 10645호)	전부개정법령이 현행 법령에까지 유지
				1987. 12. 4. 타법 개정(법률 제3993호): 군법회의법개정 법률에 의한 용어 변경		1987년헌법 성립 이후 (민주화 이후)
				1997. 12. 13. 타법 개정(법률 제5454		

				호): 법률 제명, 종전 직할시 표현을 광역시로 변경하는 등의 명칭 정비	
				2006. 10. 4. 일부 개정(법률 제8021호): 시행령에 있던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 상향 입법*	2007. 5.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052호)**
				2008. 2. 29. 타법 개정(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010. 9.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타법개정
				2011. 6. 9. 일부개정(법률 제10791호): 법령 문장 정비를 위한 개정(내용상 변경 없음)	
				2013. 3. 23. 타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경	
			2014. 11. 19. 타법 개정(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015. 1. 6. 타법 개정(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용어 변경	
			2017. 3. 21. 타법 개정(법률 제14609호):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2017. 7. 26. 타법 개정(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019. 7. 2. 타법 개정(대통령령 제29950호): 법령 문장 정비를 위한 개정(내용상 변경)

비상계엄	2024. 12. 3. (약 5.5시간)	반국가세력척결	윤석열 정권

없음)	
2020. 2. 4. 타법개정(대통령령 제 30384호):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020. 12. 20. 타법개정(대통령령 제 33084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유효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2021. 12. 31. 타법개정(대통령령 제 32293호): 지	법령의 첫 전면개정 이후의 첫 계엄 선포

					방세법의 개정 에 따른 타 법개정
<p>* 이 개정 법률이 사실상 현행 법률과 같은 것으로,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작전상 부득이 파괴하거나 소훼한 국민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을 개정이유로 하였다. 이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한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9조 제4항이 개정되고, 재산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6이 신설되었으며, 제14조(벌칙)이 개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삽입되었다.</p> <p>** 법률에서 보충이 필요한 내용을 더 규정하는 정도였다. 예로 “계엄법의 질서가 교란된 지역이라 함은 일반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의 지역을 말한다”, “계엄법의 포위공격으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이라 함은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한 전투지역 또는 그 인접지대로서 민심이 동요하고 치안이 혼란되어 정상적인 행정 또는 사법을 시행할 수 없거나 또는 당해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말한다”와 같은 정의 조항,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그 권한에 관한 규정 보충 등.</p> <p>*** 종전 시행령에 있던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상향 입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본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보상심의회 설치 및 운영,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규정, 예금계좌를 통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것이 그 내용이다.</p>					